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61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 : 안규백 · 이개호 · 김병주

장종태 • 이병진 • 박선원

황 희·허성무·한민수

이건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.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.

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,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 된 바 있음.

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,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 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 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장성급 장교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지명이 철회되거나 임명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2항의 예외로 하며, 제1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합동참모의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위해 장성급 장교를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
제18조(합동참모의장	임명)	1	제18조(합동참모의장 임명) ①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② 장성급 장교가 합동참모의
			장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지명
			이 철회되거나 임명되기 전까
			지는 제16조의2제2항의 예외로
			하며, 제16조의2제3항에도 불구
			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장교의
			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
			있는 것으로 본다.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	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
			항까지와 같음)